공직자윤리법 일부개정법률안 (윤두현의원 대표발의)

의 안 번 호 22040 발의연월일: 2023. 5. 16.

발 의 자 : 윤두현 • 박덕흠 • 박성중

최춘식 • 백종헌 • 신원식

정희용 • 이철규 • 서일준

김상훈 • 이인선 • 류성걸

정경희 의원(13인)

제안이유 및 주요내용

현행법은 재산등록의무자인 공직자 및 공직후보자가 등록하여야 하는 재산의 종류를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·지상권 및 전세권, 부동산에 관한 규정이 준용되는 권리, 동산·증권·채권·채무 및 지식재산권 등으로 규정하고 있으나, 가상자산의 등록에 대하여는 정하는 바가 없음.

그런데 재산등록의무자가 이와 같은 규정을 이용하여 가상자산을 통하여 재산을 은닉하거나 부당하게 재산을 증식하는 행위를 저지를 수 있다는 우려가 있어, 이에 대한 입법적 보완이 필요함.

이에 재산등록의무자로 하여금 100만원 이상의 가상자산을 등록하 도록 의무화하고, 가상자산을 「상속세 및 증여세법」에 따른 가상자 산 평가방법에 따라 가액을 산정하도록 하며, 가상자산사업자가 공직 자윤리위원회로부터 가상자산 거래정보에 관한 자료 제출을 요구받은 경우 자료를 의무적으로 제출하도록 함으로써 가상자산과 관련된 부 정행위를 방지하고 공직자 윤리 강화를 도모하려는 것임(안 제4조제2 항제3호타목 신설 등). 법률 제 호

공직자윤리법 일부개정법률안

공직자윤리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4조제2항제3호에 타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, 같은 조 제3항에 제15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타. 소유자별 합계액 100만원 이상의 「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」 제2조제3호에 따른 가상자산

15. 가상자산은 「상속세 및 증여세법」 제65조제2항에 따른 가상자산의 평가방법에 따른 가액

제6조의5제1항 전단 중 "신용정보회사등"을 "신용정보회사등, 「특정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」 제2조제1호하목에 따른 가상자산사업자"로 한다.

부 칙

제1조(시행일)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제2조(등록대상재산에 관한 적용례) 제4조제2항제3호타목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재산등록이나 변동사항 신고 등을 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.

신・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제4조(등록대상재산) ① (생 략)	제4조(등록대상재산) ① (현행과
	같음)
② 등록의무자가 등록할 재산	②
은 다음 각 호와 같다.	
1. • 2. (생 략)	1.•2. (현행과 같음)
3. 다음 각 목의 동산·증권·	3
채권・채무 및 지식재산권(知	
識財産權)	
가. ~ 카. (생 략)	가. ~ 카. (현행과 같음)
<u><신 설></u>	타. 소유자별 합계액 100만원
	이상의 「특정 금융거래정
	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
	관한 법률」 제2조제3호에
	<u>따른 가상자산</u>
4. • 5. (생 략)	4.•5. (현행과 같음)
③ 제1항에 따라 등록할 재산	3
의 종류별 가액(價額)의 산정방	
법 또는 표시방법은 다음과 같	
다.	<u>.</u>
1. ~ 14. (생 략)	1. ~ 14. (현행과 같음)
<u><신 설></u>	15. 가상자산은 「상속세 및 증
	여세법」 제65조제2항에 따른
	가상자산의 평가방법에 따른
	<u>가액</u>

④ ~ ⑦ (생 략) 제6조의5(금융거래정보 · 부동산 조 정보의 제공 및 활용 등) ① 공직자윤리위원회는 제5조제1 항, 제6조제1항 · 제2항, 제10조 제2항 및 제11조제1항에 따른 등록 또는 신고(이하 이 조에 서 "재산등록 · 신고"라 한다)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「금 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 한 법률」 제4조, 「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」 제33조 및 「개인정보 보호 법」 제18조에도 불구하고 명 의인의 동의를 받아 등록의무 자가 요청하면 「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 한 법률」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정보통신망(이하 "정보통 신망"이라 한다)을 이용하여 금융기관(「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」 제2조 제1호에 따른 금융회사등, 「신 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」 제15조에 따른 신용정 보회사등 및 그 밖에 대통령령

(4) ~ (7) (현행	과 같음)
세6조의5(금융거	래정보・부동산
정보의 제공 및	활용 등) ① -
J	<u>신용정보회</u>
사등, 「특정	금융거래정보의

으로 정하는 자를 말한다. 이하 이 조에서 같다)의 장에게 금 융거래 중 잔액에 관한 자료 (신용정보 중 대출 잔액에 관 한 자료를 포함한다. 이하 이 조에서 같다) 제출을 요구할 수 있으며, 해당 금융기관의 장 은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20 일 이내에 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. 이 경우 해당 금융기관의 장은 「금융실명거래 및 비밀 보장에 관한 법률 | 제4조의2 및 「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 에 관한 법률」 제35조에도 불 구하고 명의인이 동의할 때에 는 금융거래 중 잔액에 관한 자료를 제공한 사실을 명의인 에게 통보하지 아니할 수 있다.

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_
제2조제1호하목에 따른 가상자
산사업자
② ~ ⑥ (현행과 같음)

② ~ ⑥ (생 략)